

	대학발전위원회 규정		문서번호	5-1-24	
			제정일	2013. 01. 01.	
			개정일	2022. 08. 31.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 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의 발전에 관한 주요 안건을 조정·심의하고, 대학발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대학 중장기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 특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
3. 위원회의 운영과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4. 학내·외 의견수렴 및 소통과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성과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학 발전에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거나 위원 1/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·단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.

1.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 2. 위원장과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, 재학생,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 3.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기획처 직원 1명을 둔다.

제5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, 회의록은 참석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.

제6조(자료협조 요청)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	대학발전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24		
		제정일	2013. 01. 01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기획처

제8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